

5·18조사위 “10월 청문회 준비 안됐다” 대국민 사과

광주일보 의혹 제기 ‘개최 검토’ 입장 반복...지역민 “지금이라도 준비 서둘러 유종의 미 거둬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가 '10월 5·18 청문회는 준비되지 않았다'며 결국 대국민 사과문을 냈다.

광주일보가 오는 10월 청문회를 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혹(8월 22일자 6면)을 제기한 데 따른 사과문이다.

5·18조사위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문회 개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으며, 10월께 청문회 개최가 가능하다거나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전원위의 논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은 청문회 개최 관련 내용이 보도돼

위원회 위원,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당초 5·18조사위는 지난 20일 모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오는 10월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틀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청문회 개최 계획이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데다, 청문회를 불과 두 달 남긴 지금까지도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5·18조사위는 이날 청문회 준비소위원회회를 발족한 이후 지난 2월까지 3~4차례 회의를 거쳐왔을 뿐 별도의 후속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언론의 지적

도 시인했다.

실제로 '10월 청문회 개최설'이 파진 이후 5·18조사위 내부에서는 성토 목소리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과문이 나온 배경이다.

3년이 넘는 시간동안 청문회 준비소위 회의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는데, 난데없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입을 빌려 '10월 청문회' 일정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밝혔다는 것이다.

5·18조사위 위원들은 22일 긴급 논의를 거쳐 '위원장·부위원장 스스로가 기존 인터뷰 내용을 부정하는 정정보도자료를 내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구

하며 반발했다.

위원들은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데다 준비조차 안 된 건이 언론보도로 퍼진 점에 대해 사과하고, 그동안 청문회 관련 준비가 없었음을 적시할 것을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청문회를 개최하지 못할 처지에 놓인 만큼, 이제라도 청문회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역 사회에서는 5·18조사위가 이번 논란을 잘 정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한다고 입을 모은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은 “증인·참고인들이 나이가 든 만큼 이번 청문회가 사실상 ‘마지막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5·18조사위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철저한 준비를 해서 제대로

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청문회는 5·18 당사자들을 공개적으로 증인으로 세우고 공식적인 진실을 끌어내는 자리로서 매우 중요한 진실 규명 수단이다”며 “시기적으로 촉박하더라도 5·18조사위가 갖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의미 있는 청문회를 열기 바란다”고 말했다.

5·18조사위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5·18발포자, 행불자 등 핵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했다. 애초 활동 시한이 2년이었으나 각각 1년씩 두차례 연장해 오는 12월26일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우산이 없어요 23일 오후 광주시 동구 계림로에서 갑자기 내린 비에 미처 우산을 준비 못한 어린이가 가방으로 비를 피하며 길을 걷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화순·영암 민간인 학살 정부 배상 판결 잇따라

“화순군 군경민간인 희생사건” 유족 2명에 1억3300만원
 “영암군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 6명에 1억1900만원 지급”

한국전쟁 당시 화순과 영암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부장판사 김호석)은 ‘화순군 군경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 A씨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 2명에게 총 1억3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건은 화순지역 군경이 1950년 10월 28일 춘양면에서 경전선 열차가 넘어져 승객이 숨진 사고를 마을 주민에 포함된 ‘빨치산’ 소행으로 오인해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해 민간인 4명이 숨진 참사

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이 사건을 조사해 ‘당시 4명의 민간인이 열차 전복에 대한 보복으로 숨졌다’고 결론 내렸다. 유족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경찰 내지 군인들이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보복만으로 주민들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같은 날 광주지법 민사10단독(부장판사 김소연)도 ‘영암군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 B씨의 유족 6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총 1억1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 사건은 해방 직후 경찰이 주민들을 빨

치산 협력자나 좌익혐의자로 몰아 조사하다 빚어진 학살 참극이다.

B씨는 1950년 영암군 마을에 경찰이 총을 쏘며 마을로 들어 다치자 뒷산으로 피신하다 총살됐다. 진화위는 이 사건을 조사해 2022년 12월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정부는 전문증거를 근거로 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만으로 B씨를 희생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과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좌익이나 부역 혐의자로 낙인찍혀 핍박당할 수 있다는 사회 분위기 탓에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이 2022년 말에야 이뤄졌다”며 “B씨가 사망했다는 주변인 증언은 당시 상황을 경험하지 않고서 진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정부, ‘양금덕·이춘식 공탁 불수리’ 항고

정부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95) 할머니와 이춘식(103) 할아버지를 상대로 신청한 공탁이 적법하다며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청한 공탁을 불수리한데 이어 재판부가 이의신청까지 기각하자 다시 항고를 한 것이다.

2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정부를 대리한 재단이 법원의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결정항 2건(양 할머니, 이 할아버지)에 대해 항고장을 냈다.

광주지법은 민사 항소 재판부에 해당 사건을 배당해 심리할 계획이다. 사건은 광주지법 4개의 민사항소 재판부 중 한 곳에 배당이 될 예정이다.

재단은 일본과 전범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정부가 제시한 제3차 대외변제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양 할머니와 이 할아버지, 고(故) 정창희·박해옥 유족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지방법원에 판결금을 맡기는 공탁을 신청, 잇따라 기각판정을 받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불법체류자 22명 고용 완도 농장주 벌금700만원

부족한 농어촌 일손을 채우기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완도군 농장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효진)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완도군 고금면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올해 1월에 태국인 국적 외국인을 비롯해 22명을

각각 일당 7만원을 주고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농촌의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을 단기 고용한 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GIST 직원들, 사문서 위조로 벌금형

광주과학기술원(GIST) 직원들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는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지스트 직원 2명에게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4~10월 지스트 총장 명의의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 공문 등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 17장을 임의로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비례) 의원이 지적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장 의원은 GIST직원이 연구위원회 심의와 내부 승인 절차를 건너뛰고, 연구소기업을 허위 등록해 특구재단 초기사업과 지원 정부 출연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무단으로 총장 명의를 사용해 출자법인 인가서류와 연구소기업 신청서류 등을 제출한 것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6개월 동안 아들이 공모해 행사한 문서가 여러 건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문서 위조 대상이 된 5개 회사 중 3개 회사는 내부 결재가 정상적으로 이뤄져 연구소 기업 등록 조건을 갖추게 됐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창호(샷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